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215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215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 ('20.12.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주요 개정 내용 >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해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 등을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

2. 해당 개정령은 '20.12.1.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215호).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6개 지방청장(54개 전부서), 본부(52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1개 전부서), 관련협회

주무관	제권모	사무관	최규호	식품안전정책 과장	2020.12.1. 김용재
-----	-----	-----	-----	--------------	-------------------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정책과-13098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www.mfds.go.kr](http://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016 팩스번호 043-719-2000 / [beliebt81@korea.kr](mailto:beliebt81@korea.kr) / 대국민 공개